

all 바른 연구비 사용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 사례집 ②

1. 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

2. 연구비 집행 Q&A 사례

2020. 11.



all 바른 연구비 사용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 사례집 ②

1. 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

2. 연구비 집행 Q&A 사례

2020. 11.



〈 일러두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연구비 집행 Q&A는 2020 연구비 집행관리 컨설팅, 온라인 포럼에서의 질의사항 중 연구비 집행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 연구비 집행 Q&A 사례 답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인용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본 사례집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집은 향후 보다 다양한 사례를 담아 연구비 집행 Q&A 사례집으로 연속 발간될 예정입니다. Q&A에 오류 및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한국연구재단(042-869-778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A 차례

1. 인건비

1.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단가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제외 가능?	24
2.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100% 미획보인 경우 인건비 지급?	24
3. 강사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소득 구분?	25
4. 기업체 연구원이나 타 대학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미지급 참여 기준?	26
5. 1년 미만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퇴직적립금 처리?	26
6. 1년 미만 계약자가 추가 계약으로 퇴직금 발생 시 연구비 처리?	27
7. 한 연구원이 두 개 대학 연구과제에 참여 및 인건비 지급?	27
8.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인건비 변경 확인?	28
9.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인 경우 타 대학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수령 가능?	29
10. 코로나로 인한 건강보험 환급금 처리?	30
11.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 가능?	30
12. 타 대학으로 외부인건비 지급?	31
13. 개인사업자 인건비?	31
14. 프리랜서 미지급 참여?	32
15.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지급 기준?	32
16. 연구지원인력의 사무용품 사용 발의?	33
17. 초빙교원 과제 참여?	34

2. 학생인건비

18. 해외 파견 시 인건비 지급?	37
19. 학생연구원 상급 학교(대학원)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37
20. 연구참여확인서 작성 필수 여부?	38
21. 근로장학생 수혜학생의 인건비 지급?	39
22. 창업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	40
23. 코로나19로 인한 협약 연장과 학생인건비 증액?	41
24. 학생인건비 잔액 과제종료 후 1년간 지급 가능?	41
25. 인문사회분야사업 수료연구생 등록여부 상관없이 인건비 지급?	42
26. 기업현장 실습 시 학생연구원 가능?	42
27.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43

3. 연구시설·장비비

28. 기관 공통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사용?	47
29.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심의?	47
30. 시작품/시제품 자산관리?	48
31. 코로나19로 연구장비 납품기한이 지연될 경우 부적정 집행?	49
32.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50
33. 연구장비 수리 비용?	51

4. 연구활동비

34. 해외도서 현금 구매?	54
35. 디자인개발비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	54
36. 회의비 집행 시 증빙자료로 서명부가 꼭 필요한가요?	55
37.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집행?	55
38. 특근식대 집행?	55
39. 고사양 컴퓨터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	56
40. 연구기간 외 S/W 라이선스 집행 가능?	56
41. 연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범용성 기자재 구입?	57
42. 물품(범용성 집기 등) 구입?	57
43. 해외 소프트웨어 구입?	58
44. 코로나19 관련 해외결제 취소 수수료 인정?	59
45. 감염병 관련 환불 미지급액의 정산?	60
46. 체온계 구입 비목?	60
47.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외여비수수료 집행	60
48. 항공권 취소에 따른 항공사 바우처 사용?	61
49. 손세정제, 마스크 등 집행?	61
50. 과제 종료 후 학회 등록비?	61
51.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아크릴판 구입?	62
52. 온라인 회의를 위한 인터넷 사용료?	62
53. 노트북, 화상용 스피커폰 구입?	63
54. 교내 워크숍 진행 후 방역?	63
55. 코로나로 인한 학회 등록비 취소?	63
56. 연구과제 종료 후 논문제재료 집행 가능?	64
57. 임상시험 피험자의 코로나 검사 비용 처리 가능?	65
58. 항공권 재발생 차액금 처리?	66

5. 연구재료비

59. 실험재료 용도로 구매하는 기자재를 연구재료비로 처리?	68
60. 연구재료비 구매 공급 한도?	68
61.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비목 선택?	68
62.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비목?	69
63. 실험재료로 오렌지 구입?	69
64.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70
65. 연구재료비 허용 범위	70
66. 재료비(가스용기) 구입?	71

6. 연구수당

67.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20% 미만일 경우 집행 가능?	73
68.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수당 반납 유예 가능?	74
69. 이월된 연구수당 집행 가능?	74
70. 연구수당 집행률 계산?	74
71. 연구수당 계산?	75

7. 위탁연구개발비

72. 위탁연구개발비 연구비카드로 집행 시 매출전표 총액으로 집행?	76
---------------------------------------	----

8. 간접비

73. 직접비가 50% 미만일 경우 간접비 차액의 이월 가능?	79
74. 코로나19 관련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관련 간접비 회수 보류 신청?	79
75. 연구실 홈페이지 운영 비용?	80
76. 영리기관 간접비의 직접비 전용?	80

9. 기타

77.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여입된 사업비 처리?	81
78. 연구과제 정산 시 발생이자 사용?	81

all 바른 연구비 사용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 사례집②

1. 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



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19. 11. 4.〉

정부지원 연구비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公的) 자금입니다. 따라서 연구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정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권고사항은 재단과 협의회 간의 MOU(연구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2019. 8. 29.)에 근거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권고사항은 향후 관련 규정 등의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목적

● 본 권고사항은 재단 지원과제 수행 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연구비 집행 원칙과 비목별 핵심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비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권고사항에 없는 사항은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③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④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⑤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사업의 시행요강 및 협약서 등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2. 적용 대상

● 본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입니다.

※ 재단과 협의회는 본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이 향후 재단 지원 연구과제 이 외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연구비 사용 원칙

- 재단이 지원한 연구비는 아래와 같은 10가지 원칙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연구계획 확인

- ①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한다.

- 연구비는 비목별로 필요한 만큼 계획(계상)해야 한다.
 - 계획 변경 시에는 사안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재단)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한다.

- ②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한다.

- 연구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건은 환수 및 제재 대상이다.

- ③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로 흡수된 경비,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최종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 제8호 중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경비 제외)는 예외로 한다.

관련규정 준수

- ④ 연구비는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⑤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예시) 자문료, 출장비 등

⑥ 특정 아이템에 대해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문의한다.

-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에 질의하고, 수행기관의 책임부서는 전문기관(재단)에 질의한다.

사용내역 입증

⑦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한다.

- 현금은 타당한 사유(연구비 카드 사용불가 등)가 있을 때 일정한 한도 내로 집행할 수 있다.

⑧ 연구비는 객관적인 증명서류(전자증빙 등)를 구비하여 집행한다.

- (증명자료) 결의서, 영수증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등
-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입력) 통합이지바로시스템과 연계된 연구기관의 연구관리 시스템 또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www.gaia.go.kr)

이해충돌 회피

⑨ 인건비·연구수당은 연구과제 참여율과 기여도에 비례하여 집행한다.

- 인건비나 연구수당 지급액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변경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⑩ 연구비 집행은 공무(公務)이므로 사무(私務)와 명확히 구분한다.

- 부득이 공무(公務)와 사무(私務)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분리하여 집행해야 한다.

4.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대학 등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본 권고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대학 등 연구기관은 필요 시 본 권고기준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비를 집행 시 본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비 비목별 집행가이드와 증명자료는 <붙임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비목별 연구비 계상·집행 핵심 가이드

〈주의 사항〉

본 가이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과제(특히 대학 수행과제) 수행자들의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인문사회 분야는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제시할 예정입니다.

1. 인건비

- ①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 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과제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을 거쳐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④ **인건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재단)에 보고해야 한다.**
 - 해당 금액에는 미지급인건비와 학생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연구비(직접비)에서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와 연구수당은 집행할 수 없다.(2019. 9.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참여연구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여러 개의 과제를 둑어서 집행이 가능하다.
 - 단,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전출·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간접비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직접비와 중복, 분할 계상·집행 금지).

2. 학생인건비

-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총액만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며,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미지급 참여 불가).
- ③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준금액은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되,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 등 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원은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단, 원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 100%를 받는 학생의 경우 지급 불가).
 - (예시) 학생 '갑'이 A과제에 80% 참여 시, B과제 참여율은 20%를 넘지 못한다.
- ④ **휴학생은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지급한다.**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⑤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지급한다.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후 2020. 12. 31.까지 학생인건비 계상 및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것도 허용
- ⑥ **개별로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개인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교수에게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제별로 5년), 연구비 환수(공동관리금액 전액), 제재부과금(환수액에 비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적발 사건 처리 사례(예시)〉

□ 사건 개요

- 내부고발을 통해 모 대학 A교수가 국가연구개발과제 3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인건비 5억원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고, 감사를 통해 동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됨.

□ 처분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5년(5년+5년+5년) 〈과제별로 처분〉
- 연구비 환수: 5억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조성 전액〉
- 제재부가금: 3억7천5백만원 〈규정에 따른 부과금액〉
- ※ 학생인건비 공동 관리 금액을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 관리한 금액 전체가 제재 처분 대상임.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3. 연구시설·장비비

- ①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등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명기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계 기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재단)), 1억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 상기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 <http://www.zeus.go.kr>) 또는 NTIS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부착해야 한다.

- ② 연구비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해야 한다.

- ③ 연구시설·장비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 한다.

- ④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연구계획서(계획 변경 포함)에 반영되어 있을 때만 집행할 수 있다.
- ⑤ 시설 유지보수비는 원래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만 집행할 수 있다.
- ⑥ 기관공통기자재, 공통연구환경구축비는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로 집행해야 한다.
- ⑦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는 고정자산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시제품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⑧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 등록된 장비의 공동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구매해야 한다.

4. 연구활동비

- ① 국내외 출장 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
- ② 사무용 기기(컴퓨터·프린터 등)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은 과제 종료(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완료(검수 완료)하여 해당 연구에 사용해야 한다.
- ③ 여비는 출장자의 소속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제수행기관의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 ④ 종신 학회비, 최종 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는 집행할 수 없다.
- ⑤ 회의비 등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 집행한다.
 - 주의 사항 : 회의비 집행 시는 외부기관 참석자가 포함되어야 함, 회의 개최 없이 평일 점심 식대 불가, 특근 식대는 초과근무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⑥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 증명자료를 구비하고 집행해야 한다.
- 전문가 활용 증명자료(예시):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전문가 활용 계약서,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 증명

5. 연구재료비

- ① 연구재료는 해당 연구과제와 연계된 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
- 단,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한 경우는 가능하다.
- ②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구매 건에 대해서는 중앙구매제도를 이용 해야 하며, 구매물품은 검수를 해야 한다.

6. 연구수당

- ① 연구수당은 인건비(포함항목: 현물/미지급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항목: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당초 연구계획에 없는 연구수당은 신설할 수 없다.
- ② 연구수당은 일정 기간 연구가 진행된 후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연구수당 지급규정 등)에 의거하여 참여연구원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
- ③ **연구수당의 개인별 최대 지급률은 총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연구책임자 단독 과제는 예외를 인정한다.
- ④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으며,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을 감액 해야 한다.**
- ⑤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⑥ 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은 회수하여 공동관리할 수 없다.

7. 위탁연구개발비

- ①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미지급 인건비 제외)의 40% 범위 내에서 연구계획서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연구계획서 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20% 이상을 증액할 수 없다.
- ③ 주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정산, 집행잔액 회수, 결과보고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다.
- ④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⑤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집행도 본 권고사항에 따른다.

8. 간접비

- ① 간접비는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으며, 영리기관인 경우 당초 계획하지 않은 간접비를 신설할 수 없다.
- ②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주관연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월할 계산 하여 차액을 처리한다.
 - 간접비 비율: 前 소속기관 \leq 現 소속기관 \Rightarrow 월할 계산하여 차액을 현 소속기관으로 이제
 - 간접비 비율: 前 소속기관 > 現 소속기관 \Rightarrow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전문기관(재단)에 반납 또는 現 소속기관에서 직접비로 이전용 가능
- ③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이 일괄적으로 흡수하여 지출할 수 없다.
 - 영리기관은 간접비 집행 잔액을 전문기관(재단)에 반납해야 한다.
- ④ 간접비의 사용 용도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 관계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등

붙임2

연구비 비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목		증명자료	
1. 인건비	내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 증명	
	외부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 증명	
	연구지원인력인건비	① 연구지원인력 현황표(연구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2.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증빙(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연구참여확인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⑥ (창업 학생연구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4. 연구활동비	국내 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 경우	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 없는 경우	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 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국외 출장 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세목			증명자료
여비지급 내부 기준 없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4. 연구 활동비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기술정보수집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 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 게재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 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 증명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허정보 조사 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자산 창출 활동 경비	특허 정보 조사비 등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세목		증명자료
4. 연구활동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소액의 소모성 경비	<p>회의비</p> <p>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회의록 제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하며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전원 명단 등은 명기(참석자 전원 서명날인은 폐지) ② 카드매출전표</p>
		<p>식대</p> <p>① 카드매출전표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p>
		<p>사무용품(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p> <p>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p>
		<p>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p> <p>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p>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p>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p>
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사업 추진비용		<p>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 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p>
5. 연구재료비		<p>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⑤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p>
6. 연구수당		<p>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 증명</p>
7. 위탁연구개발비		<p>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p>
8. 간접비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all 바른 연구비 사용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 사례집②

2. 연구비 집행 Q&A 사례



연구비 집행 Q&A 사례

1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부당집행 공통기준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금액
 -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 다만, 「공공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제12조의2 제8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통합관리 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
 -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p64

1

인건비

1.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 분	정 의
내부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연구지원 인력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계상기준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세부산정기준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기관이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 단,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10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참여율 100% 기준금액)에서 기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 할 수 있음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를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인건비 계상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 관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당금(퇴직급여총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민간과의 협력, 민간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단,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총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6. 당초계획 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인건비 산정
----	--------	----	-----	-----	--------

Q1.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단가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제외 가능?

연구원 참여율 계상 시 기준단가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은 내부 규정이 있으면 제외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 6. p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를 때 급여총액에는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금분을 포함됩니다. 급여총액을 해당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p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건비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 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기관에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인건비 미확보
----	--------	----	-----	-----	---------

Q2.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100% 미확보인 경우 인건비 지급?

대학, 기업 및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대학/타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소속기관으로부터 100%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연구비에서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2020. 6. p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를 때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0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시간)강사 인건비
----	--------	----	-----	-----	------------

Q3. 강사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소득 구분?

강사법 개정에 따라 강사 신분이 시간강사(전업시간강사가 아닌 경우)임에도 강사로 큰 범주에 해당하여, 신분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따라 연구비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었음에도, 지원기관 내부적으로 인건비 지급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사업별로 기타소득, 근로소득(소득구분)을 명확히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관련법령(소득세법) 및 수행기관 내부 기준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제20조, 제21조)을 참고해야 합니다. 강사의 과제 참여 가능 여부와 인건비 지급액의 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내부 기준과 수행기간-해당 강사 간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검토,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후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후략>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타 대학 연구원
----	--------	----	-----	-----	----------

Q4. 기업체 연구원이나 타 대학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미지급 참여기준?

기업체 연구원이나 타 대학 소속 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130%까지 산정하여 미지급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불가합니다.

참여율 130% 이내 인건비 계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이 원칙입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인건비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 단,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10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이하 생략”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퇴직금
----	--------	----	-----	-----	-----

Q5. 1년 미만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퇴직적립금 처리?

참여연구원이 1년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퇴직금을 적립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1년 이상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퇴직적립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A. 당해연도 정산 기간이고 다년도 과제이면 이월 가능하며, 정산 종료되었다면 반납해야 합니다.

다년도 과제이면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기간 내라면 이월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가 종료되었다면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은 전문기관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사유 첨부)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퇴직금
----	--------	----	-----	-----	-----

Q6. 1년 미만 계약자가 추가 계약으로 퇴직금 발생 시 연구비 처리?

1년 미만으로 과제참여를 계획했다가 참여기간이 연장되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초단시간 계약(퇴직금 적립의무X)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전일제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 시기가 당해 과제가 종료직전이거나 차년도로 넘어갔을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연구비가 이미 소진되었거나 당해과제가 종료되어 적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 이 때 퇴직금의 경우 연차기간 이내라면 적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연구과제 종료 후 정산기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년도 과제이며, 참여연구원이 현재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과거에 불가피하게 충당하지 못한 퇴직금은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란 문의하신 내용처럼 가령 당초 6개월간 연구과제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1년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관 연구기관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연구비에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과제 참여
----	--------	----	-----	-----	-------

Q7. 한 연구원이 두 개 대학 연구과제에 참여 및 인건비 지급?

B대학 국가과제에서 흥길동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A외부기관장확인서를 받은 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흥길동연구원의 기준단가는 A대학인지, B대학 인지요?

A.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A대학)의 단가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A대학의 인건비 지급 기준단가에 및 고용계약서 상 인건비가 100%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타 대학에서 인건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B대학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 원 소속기관이 A대학이기 때문에 참여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단가는 A대학의 내부 규정이 됩니다. 한편 원 소속기관은 근로조건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인건비 계상기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예산변경
----	--------	----	-----	-----	------

Q8.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인건비 변경 확인?

세목인 내부인건비 전체 총액에서 증액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인력 개개인의 인건비의 증감을 지원(전문)기관으로 예산변경 신청 없이 주관연구기관 승인 하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기준단가, 참여율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단가 또는 참여율이 변경된다면 참여율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외국인 과제 참여
----	--------	----	-----	-----	-----------

Q9.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인 경우 타 대학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수령 가능?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타 대학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인건비를 받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법무부 소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인 경우 대학 이 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법무부, 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2018. 3. 1.)

- 외국인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허가제외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 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제외대상* 예시

-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십¹⁾, 연구프로젝트²⁾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 ☞ 인턴십은 반드시 학점취득과 연계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당 수령은 허용하되, 출업전 취업 형태의 인턴십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도 아님
 - ☞ 연구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신고 대상이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
-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1회 및 비 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체류관리과-4716, 2010.7.22.)
- ※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여부 판단

- 1) 학사규정에 따라 학점취득을 위하여 행하는 실습 또는 인턴행위(방학중, 학기중 불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 허용되며, 이는 비록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 허용함
- 2) 연구프로젝트 참여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지도교수와 함께 참여 하더라도 프로젝트 주관이 소속 대학이외의 기관인 경우는 허가 필요)하며, 대학 외부에서 주관(공동주관은 제외)하는 연구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내부인건비 코로나19
----	--------	----	-----	-----	-------------

Q10. 코로나로 인한 건강보험 환급금 처리?

이번 코로나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 감면혜택이 있었습니다. 종료된 과제 참여 인력의 코로나 감면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환급 및 재정산 후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가 환급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환급 처리하고, 기관에게 환급을 해주는 경우에는 정산보고 이전인 경우에는 집행 잔액을 차년도 과제로 이월 가능하며,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정산 후 해당 금액 전문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분야	인문사회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전문인건비
----	--------	----	-----	-----	-------

Q11.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 가능?

현재 전문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박사급연구원이 연구 참여를 못하게 된 경우 인건비를 감액하여 직접비로 전용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제5항에 따라,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박사급 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의 전임교원 임용 또는 취업된 경우 전문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을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통해 전문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 수당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사업비의 사용) ⑤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후략)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인건비
----	--------	----	-----	-----	-----

Q12. 타 대학으로 외부인건비 지급?

교수님께서 타 대학 근로계약자를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하시려고 합니다. 타 대학 과제 참여율은 10% 본교 과제엔 80% 참여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타 대학 급여테이블을 따라 인건비 지급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타 대학 근로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4대보험 법인부담금,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 타 대학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교과제 재원에서 타 대학으로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총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지급이 가능하다면 외부인건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는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타 대학 연구원이므로 외부인건비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참여율 포함)에 따른 인건비를 외부연구원 소속 기관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주관연구기관으로 제출(사유 및 인건비 내역(개인별) 포함)한 후 기관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때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 기관은 해당 개인별로 매월 지급한 인건비 증명자료(계좌이체증명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개인사업자 인건비
----	--------	----	-----	-----	-----------

Q13. 개인사업자 인건비?

정부과제 인건비로 참여 연구원의 참여율을 100% 으로 입력하였는데, 참여 연구원이 개인 사업자(통신판매업)를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인건비 지급(2020. 6. p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개인소득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프리랜서 인건비
----	--------	----	-----	-----	----------

Q14. 프리랜서 미지급 참여?

소속이 없는 연구원(직장가입자 X)이 과제 프리랜서 계약 후 과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계획서에 없는 연구원) 이 때 미지급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관리표준매뉴얼. 2020. 6. p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율 100% 범위 내에서 미지급 참여는 가능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	----	-----	-----	-----------

Q15.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지급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인건비 비목의 산정기준에 '연구지원 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중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라는 내용이 동일 월에 대한 중복 분할 금지인지 아니면 과제 전체에 대한 중복 분할 금지인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지원인력 A : (가)과제에서 직접비로 인건비 1~6월분 지급 / (가)과제에서 간접비로 7~12월분 인건비 지급. 위와 같은 경우로 지급을 원하는 과제가 있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문의하신 내용대로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및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인력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지원인력이라는 점, 연구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한 것이 고려된 것이라면 같은 달에서 인건비 재원의 중복, 분할 집행은 금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동일한 (가)과제에서 1~6개월은 직접비에서, 7~12개월은 간접비가 투입되므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	----	-----	-----	-----------

Q16. 연구지원인력의 사무용품 사용 발의?

연구관리표준매뉴얼을 보면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라고 되어있는데요. 연구활동비에 세세목인 사무용품이나 인쇄비에 대한 발의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 6. p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서술되어 있는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는 해당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을 계상·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에서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무용품, 인쇄비 등에 대한 발의 권한은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있으며, 연구지원인력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 내용에 대한 연구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인건비 계상기준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 연구소(센터) 등
 -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초빙교원 과제 참여
----	--------	----	-----	-----	------------

Q17. 초빙교원 과제 참여?

학교에서 강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초빙교원이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이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강의로 인한 소득과 과제로 인한 소득의 합이 총 인건비 기준액의 100%를 넘지 않습니다.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2020. 6. pp63-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건비는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은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2

학생인건비

1.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소속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계상기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및 미지정기관을 구분하여 계상

구 분	정 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p>※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p>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 확인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가능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구 분	정 의
	<p>-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p> <p>○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p> <p>※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100만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18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250만원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p>

3. 특기사항

- 학생인건비를 계상하는 연구개발과제(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원을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등록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는 학생연구원별 총 참여율을 관리하여야 함
- 휴학생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

※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2020. 12. 31.까지 학생인건비 계상 및 통합관리 계정에서 지급하는 것도 허용

* 박사후연구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리서치펠로우 포함)

※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①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②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③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지급액과 다르게 지급한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⑦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학생인건비	키워드	해외파견 학생인건비
----	--------	----	-------	-----	------------

Q18. 해외 파견 시 인건비 지급?

두 과제에 동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타 과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해외 파견(2개월)을 갈 경우에도 본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할까요? 해당 학생들은 해외 체류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연구 관련한 지속적인 연락 예정입니다.

A. 가능합니다.

해당 파견이 과제 관련성이 있거나, 파견으로 체류하는 장소에서도 정상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하다면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노트를 충실히 기록·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해외 파견이라 할지라도 학생의 소속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원소속 대학의 학생 신분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학생인건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사·硕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소속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학생인건비	키워드	진학 관련 학생인건비 지급
----	--------	----	-------	-----	----------------

Q19. 학생연구원 상급 학교(대학원)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입니다. 동일 대학 내에서 학사 → 석사 또는 석사 → 박사로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허용하는 것으로 안을 주셨는데, 그럼 과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참여 중단 없이 계속 참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2020. 7. 16. 개정)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계정책임자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연구원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계정책임자가 인정하는 학생연구원을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 참여 중단 없이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2020. 7.16)

제1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② 계정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을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정할 수 있다.

1.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
2.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연구원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계정책임자가 인정하는 학생연구원
 - 가. 학사·석사·박사 과정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 나. 석사·박사 과정의 입학예정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 말일까지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학생인건비	키워드	연구참여확약서
----	--------	----	-------	-----	---------

Q20.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필수 여부?

연구참여확약서는 인문/이공 과제의 참여연구원(외부연구원, 학생연구원) 필수 구비서류인가요?

A.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는 이공분야는 필수이고, 인문사회분야는 필수가 아닙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61호, 2019. 8. 1., 전부개정)」에 의거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정산 시 연구참여확약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인 경우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분야의 경우에는 취업자는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기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근거로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취업자에 해당되므로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부연구원의 경우 이공분야에서는 과제참여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6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업무)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략”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인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학생인건비 정산시 제출 서류

구분	증명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p>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증빙(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p>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p>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원명,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u>연구참여확인서</u>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⑥ (창업 학생연구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p>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학생인건비	키워드	장학금 중복 지급
----	--------	----	-------	-----	-----------

Q21. 근로장학금 수혜학생의 인건비 지급 여부?

교내 행정부서에서 근로학생으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시급 형태로 근무시간만큼 받으며, 월120만원 상당)을 받고 있는 학생이 연구과제 참여하면서 학생인건비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 6. p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학생 인건비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타 근로계약 여부를 확인하되,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산정 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를 때 학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장학금을 인건비로 해석 되는지 주관연구기관의 검토와 단기근로에 대한 통합관리기관의 장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

2. 학생인건비 사용 방법

-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취업여부 확인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창업소득과 상관없이 총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지급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참여율에 따라 지급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학생인건비 지급
 -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타 근로계약 여부를 확인하되,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기근로*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계산 시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등 단기근로(예: 대학 강사 급여,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 등)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참여계약 시 해당 업무가 단시간 근로임을 별도 서약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학생인건비	키워드	창업학생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	--------	----	-------	-----	------------------

Q22. 창업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

학부생이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이력이 나오게 됩니다. 학생인건비를 수령하고 있는 학부생이 창업을 한 경우에 창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더라도 학생인건비를 동시에 수령을 할 수 있는지와 추후 감사에 대비하여 어떤 서류를 구비해두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2019년 공동관리규정, 표준매뉴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매뉴얼 등에 창업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에는 '창업소득과 상관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업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 문서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면 됩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구분	세부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 <u>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u>
학생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⑥ (창업 학생연구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학생인건비	키워드	학생인건비 증액코로나19
Q23. 코로나19로 인한 협약 연장과 학생인건비 증액?					
<p>사업종료기간이 5월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연구기간을 8월로 협약 연장하였는데 이 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학생 인건비 증액도 가능한가요?</p>					

A. 증액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서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집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총연구비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증액되지 않습니다. 연구비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학생인건비는 연구계획 변경(사유서 첨부)을 통해 연장된 기간 동안 증액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야	인문사회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학생인건비
Q24. 학생인건비 잔액 과제종료 후 1년간 지급 가능?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인 경우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학생연구원에게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6조 제2항 제5호 및 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학생연구원에게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한 사용잔액은 전문기관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6조(집행잔액의 회수) (전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5. 사업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 연구과제 수행 종료 후 논문제재료 등 학술활동 성과의 발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중략)

⑤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과제 참여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한 사용잔액은 제1항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분야	인문사회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수료생인건비
----	--------	----	-----	-----	--------

Q25. 인문사회분야사업 수료연구생 등록여부 상관없이 인건비 지급?

인문사회분야사업은 수료연구생 등록여부 상관없이 수료생에게 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비용항목별 계상기준에 의하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 보조원의 학력에 따른 월 지급기준은 전문학사·학사학위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원은 월 100만원 이내, 석사학위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원은 월 180만원 이내, 박사학위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은 월 250만원 이내) 정해져 있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학생인건비
----	--------	----	-----	-----	-------

Q26. 기업현장 실습 시 학생연구원 가능?

현재 과제 참여중인 학생연구원이 기업현장실습에 2학기 동안 참여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만 가입했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할까요?

A.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02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은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	--------	----	-----	-----	-------------

Q27.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수행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이 2020. 9월부터 해외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8월 중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국해서도 과제 관련 연구 수행 활동은 계속 할 예정일 때 학생연구원이 8월 전체 기간을 해당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실제 연구에 참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는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수행연구과제 참여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예시. 연구노트, 보고서, 참여기간 기록, 연구책임자 확인서 등)를 검토하시어 집행하시면 됩니다.

3. 연구시설·장비비

1. 정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임차대차 및 시설 설치경비, 유지·보수비용 등 장비에서부터 시설까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모든 인프라 구축 비용

2. 사용범위

연구장비 구입

-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분석·시험·계측·교육(훈련)·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 구축 비용
- 소프트웨어의 경우 연구과제 관련성이 입증되는 사무용이 아닌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연구시설 구축

-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생물사육 시설과 진공·진동·압력·냉동·무균·청정·무항·저온·고온·항온·항습·조파·풍속·주행·충돌·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고, 연구용 선박·항공기·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한 구축 비용

장비개발비

-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수행기관의 고정자산번호를 부여 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부대비용

- 연구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설치비 및 성능 향상비) 및 시설·장비의 임차대차에 관한 경비와 연구장비를 이전받거나, 동일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이전 설치 시 소요되는 설치경비 및 유지·보수 비용·운영비

※ 연구시설·장비비(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주요내용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 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주요내용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정의]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와 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비로 구축되고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및 통합관리 하는 유지·보수비 비용을 말한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신청자격]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의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3. 별표 1의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가진 기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충족요건]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정관리:
가. 총액관리: 통합관리·사용·잔액 현황관리 가능(최근 5년 사용잔액 비율 관리 가능)
나. 통합관리계정 설정: 기관계정설정(과제별 적립 사용현황 관리 가능)
다. 계정 적립 잔액 한도 관리: 적립잔액 한도초과 사전 방지
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관리
가. 사용관리: 사용절차 구현 및 사용내역 확인가능
나. 사용대상관리: R&D 재원의 ZEUS 장비 관리 기능 및 계정 연계
다. 사용현황관리: 계정별 사용내역(유자·보수 장비 등록번호, 사용액, 사용처 등) 확인가능
라. 잔액관리: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확인 가능
마. 상시점검관리: 사전 점검 및 관리 기능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9. 5.31. 개정)

1. "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고 별표 1의1에서 정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가. "단독활용 시설장비"란 별표 1의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 나. "공동활용 시설장비"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3. 시설장비는 활용 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활용 시설장비"란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나. "저활용 시설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를 말한다.
 - 다. "유휴 시설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 라. "불용 시설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4. 시설장비는 구축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개별 시설장비"란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시설장비를 말하며, 주장비에는 여러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 나. "시스템 시설장비"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별 시설장비를 결합하여 기존 구성요소와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 다. "개발 시설장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결과물로써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시설장비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2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총칭한다.
7. "지원기관"이란 영 제42조제6항의 지원기관을 말한다.
8. 삭제
9.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 제2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가. "연구기관기본사업"이란 공동관리규정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나. "정부위탁연구사업"이란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시설장비책임관"이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전담운영인력"이란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13. "시설장비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14. "집적시설"이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고 공동활용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15. "기관내거래"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내 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거래를 말한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시설·장비비	키워드	유지보수 비용
----	--------	----	----------	-----	---------

Q28. 기관 공통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사용?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불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에 활용이 필요하여 사용하는 기자재는 대부분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 자산의 기자재인 경우 이 유지보수비도 불인정인가요?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2020. 6. p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를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수행연구 과제와 직접적이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을 필요하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대학별 공용장비 (교육·연구용)센터**에서 관리 및 운영되는 장비의 경우 **기관공통 기자재의 시설유지 보수비는 간접비성 경비로 간접비 비목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장비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공동활용장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시설·장비비	키워드	연구장비 도입심의 절차
----	--------	----	----------	-----	--------------

Q29.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심의?

최초 연구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의 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획서에 계상된 장비에 대해서 연구재단에 한 번 더 승인요청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3천만원 이상이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대상으로 심의요청서를 재단으로 제출하여 연구장비 심의를 받은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 후 30일 이내에 ZEUS RED시스템 또는 NTIS에 장비를 등록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장 시설장비의 관리 제1절 시설장비의 관리체계

제10조(심의요청) ①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ZEUS를 통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본심의 : 연 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점
2. 상시심의 : 해당 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도 심의요청 할 수 있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 시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시설장비별 구축 계획서,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사전기획보고서(구축금액 5억원 이상), 예타보고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계획서(상시심의에만 해당되며, 이때 사전기획 보고서 제출 생략)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 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입인정'과 '조건부인정'에 한정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이상 변경된 경우
 2.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구축타당성을 인정받은 시설장비를 다른 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3.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기 평가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 ⑤ 총 구축비용이 50억원 이상인 시설장비는 지원기관과 심의일정 등을 협의한 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⑥ 심의요청 시 최종(단계) 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시설·장비비	키워드	시작품/시제품	자산관리
----	--------	----	----------	-----	---------	------

Q30. 시작품/시제품 자산관리?

연구기간 동안 제작하여 완성된 시작품/시제품의 관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구 특성상 시작품(시제품)의 형태가 기자재, 소모품, 식품일 수 있는데 이 완성품은 자산관리 대상인가요?

A.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 자산관리 대상입니다.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이므로 자산 관리여부는 주관 연구기관의 내규에 따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산적 가치가 있고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다면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보고 자산관리대상입니다.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 반면, 소모품 및 식품, 자산적 가치 등 내구성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_자산관리〉

제20조(자산등재) ①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 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3의1의 기준에 해당하는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에 따라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ZEUS에서 발급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의 발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전자인식표 등을 지원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해당 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_시제품의 정의〉

시제품의 정의

시작품(試作品, Prototype)

-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

-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

* ZEUS(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s://www.zeus.go.kr>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시설·장비비	키워드	코로나19 / 연구장비 도입
----	--------	----	----------	-----	-----------------

Q31. 코로나19로 연구장비 납품기한이 지연될 경우 부적정 집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장비의 납품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과제종료 2개월 전에 비용집행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며 부적정 집행에 해당되는지요?

A. 연구장비 도입기한 유예신청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코로나19 대응 R&D 지침(II)에 따를 때 불가피하게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 장비 도입기한(종료 2개월 전)을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 연장 병행)

※ 필수 연구장비, 불가피한 장비 도입 지연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 연장 허용
(최대 연장허용 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기간)

◇ 참고자료

〈코로나19 대응 R&D 지침_한국연구재단〉

□ 연구기간 연장 시 코로나19 인정 범위(사유)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입국이 필수적이나(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출입국이 불가능하여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가 필수적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실험실 폐쇄, 실험자 모집불가 또는 연구진행에 필수적인 시약, 재료, 장비 등의 수급 및 연구 Date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그 외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계획 완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 19 인정 범위(사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시설·장비비	키워드	비목 선택
----	--------	----	----------	-----	-------

Q32.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에서 과제의 세부 성격 상 다음과 같은 품목을 외부 교량 건설 현장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장 산업용 DB 2. 무선라우터 3. 현장카메라(CCTV용) 4. 계측 데이터 수집장치 5. 전압공급장치

위 물품 중 200만원, 1,250만원짜리 물품도 존재합니다. 해당 물품은 교량에 설치되어 실험에 활용 됩니다. 이 경우 연구 실험실에 설치하지 않고 계속 외부에 설치되어 실험에 활용 되는데 시설 장비비로 구입해야 할지 연구 재료비로 구입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용도와 특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정의하는 '시설장비'는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합니다. 연구시설은 '일반 연구 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장비는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입니다. 장비와 재료를 구분하는 특징으로 장비는 내구성을 가지며, 재료는 소모성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현장 산업용 DB, 무선라우터, 현장카메라(CCTV용) 등이 위의 내용에 따를 때 어디에 속하는지 검토 하시어 비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자산등록대장에 등재되어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시설·장비비	키워드	연구장비 수리비
----	--------	----	----------	-----	----------

Q33. 연구장비 수리 비용?

연구장비 수리비(부품교체)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사업비로 구매한 장비가 아니라, 주관연구기관 자산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이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수리(부품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리(부품교체)가 필요한 사유서를 구비하고 집행 할 예정입니다. 연구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 중 어떤 세목으로 집행을 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수행과제와 관련이 있고, 주관연구기관 자산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2020. 6. pp72-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 장비의 유지보수비로 보아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연구활동비

1.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뜻함.(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전문가(일용직) 활용비, 국내외 교육활동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기술도입비 등)

2. 사용용도

- ① 국내외 출장여비
- 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 ③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제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⑤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⑥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 ⑦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⑧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기기 등이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⑨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3. 계상기준

- ①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 가. 참여연구원인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 ②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에서 별도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④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해외도서현금구매
----	--------	----	-------	-----	----------

Q34. 해외도서 현금 구매

코로나로 인해 중국 출장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중국 원서를 구매하셔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직접 가실 수가 없는 관계 및 인터넷 구매 등이 불가한 도서들이 있어서 지인으로부터 구매를 요청하셔도 되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도서금액 * 중국위안으로 계상) 현금으로 교수님께 이체 해드려도 될까요? 추후 관련 도서는 도서관에 등록 예정할 예정입니다.

A. 가능합니다.

연구비는 해당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해야 하며,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를 때 문의하신 도서 구입이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지 검토하여 타당하다면(사유 포함)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20. 6.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비 관리기준(p.52)

-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시제품 디자인 용역
----	--------	----	-------	-----	------------

Q35. 디자인개발비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

주스 연구개발 중 주스를 담을 파우치와 박스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파우치와 박스제작에 필요한 디자인개발을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계획서상 예산 편성 내역)

- 시작품제작경비 : 포장용기와 부자재성으로 10,000천원
- 디자인개발컨설팅비 : 디자인개발비용으로 4,864천원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활동비 정의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연구 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별표 1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분류에 명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지원업에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스를 담을

파우치, 박스 제작이 연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디자인개발비용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활동으로 보아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연구활동비 공통항목 외 추가로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회의비 서명부
----	--------	----	-------	-----	---------

Q36. 회의비 집행시 증빙자료로 서명부가 꼭 필요한가요?

회의비 집행 증빙으로 회의록만 있으면 된다면, 서명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회의비 정산 시 연구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참석자에 대한 서명 확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회의비
----	--------	----	-------	-----	-----

Q37.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집행?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은 부당집행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 적혀있는 내부기관의 내부연구원과 사업계획서 상 반영되어있는 외부연구원 간의 회의도 부당집행에 해당할까요?

A. 외부기관 참석자 없는 회의비는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부당집행에 해당됩니다. **(참여연구원 소속이 타 기관이면 부당집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특근식대
----	--------	----	-------	-----	------

Q38. 특근식대 집행

특근식대의 경우도 서명유무가 궁금합니다. 회의비와 같이 연구책임자의 서명만으로 가능한지, 특근자가 누구인지만 등록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연구수행기관의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야근(특근) 식대 기준은 연구기관의 내규에 따라 집행합니다. 야근(특근) 식대는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고 초과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무일지, 근무시간이 기록된 결재문서, 사유서 등)가 필요합니다.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에는 야근 및 특근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나 연구수행기관 양식으로 실제 야근 및 특근을 확인 할 수 있다면 서명은 생략 가능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서버급 컴퓨터 등
----	--------	----	-------	-----	-----------

Q39. 고사양 컴퓨터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

일반 기본 사양의 컴퓨터가 아닌 고사양의 전문가용 컴퓨터나 서버급 컴퓨터 등의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A.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목적용 컴퓨터(전문가용 컴퓨터, 서버급 컴퓨터)라면 연구 시설·장비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목적용 컴퓨터(전문가용 컴퓨터, 서버급 컴퓨터)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등 포함)인 경우는 관련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명기하고, 「국가연구 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기관(재단)), 1억원 이상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연구기간 외 집행
----	--------	----	-------	-----	-----------

Q40. 연구기간 외 S/W 라이선스 집행 가능?

마지막 차년도 연구비에서 연구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집행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최소 계약단위에 대한 소명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인정됩니다.

연구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사용계약 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 집행이 인정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범용성 장비 구입
----	--------	----	-------	-----	-----------

Q41. 연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범용성 기자재 구입?

연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도 범용성기자재(USB, 외장하드, 노트북, 컴퓨터 등) 구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을 필요하다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 6. p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를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설치·임차·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 <연구활동비> 정의 중에서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설치·임차·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 ※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W라이선스는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 인정 (다만, S/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
 - ※ 비영리기관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용 S/W 라이선스 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로 통합하여 구매·관리 가능(기관단위 연구용 S/W라이선스 통합구매를 위해 기관장 명의로 과제별 비용을 분담한 확인 공문서 등을 발송하고, 그 비용을 기관이 흡수해야 함)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범용성 물품 구입
----	--------	----	-------	-----	-----------

Q42. 물품(범용성 집기 등) 구입?

물품 구입 시 구입 가능한 가격대와 금액 적정선에 대한 의문이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범용성 집기의 경우 가격대가 방대하여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A.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구입하시면 됩니다.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연구 내용,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면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연구활동비는 총액으로 기재하며, 총액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행과제의 연구에 필요한 사항이고, 세세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 2019. 11. 한국연구재단〉

연구계획 확인

- ①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한다.**
 - 연구비는 비목별로 필요한 만큼 계획(계상)해야 한다.
 - 계획 변경 시에는 사안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재단)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한다.
- ②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한다.**
 - 연구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건은 환수 및 제재 대상이다.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다. 원래 계획과 다르게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해외 소프트웨어 구입
----	--------	----	-------	-----	-------------

Q43. 해외 소프트웨어 구입?

교수님께서 연구에 필요한 비범용성 영구사용 라이센스 해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고자 하십니다. 구입비용은 5,500유로입니다. 주관기관 내부사정상 중앙구매를 통해 구입을 할 수 없어, 사유서를 첨부하여 연구비카드로 결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하며, 수행연구과제의 연구목적 달성을 용도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해외 소프트웨어가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용 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 사용계약 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프트웨어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영구사용 라이센스 해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 최소 구입 단위가 '영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구비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코로나19, 취소 수수료
----	--------	----	-------	-----	---------------

Q44. 코로나19 관련 해외결제 취소 수수료 인정?

코로나 사태로 연구비 정산을 2개월 연장신청 하였으나,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취소 건은 3개월이 지난 후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 반납된 건은 이월이 아닌 반납할 계획이나, 이 때 취소수수료를 연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를 때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손세정제,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비용(기관폐쇄에 따른 연구중단·재개 비용 등),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에 수행하지 못한 비용(출장여비 취소 수수료, 회의 취소 위약금 등)**은 **연구개발비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 등을 연구개발비 정산에서 폭넓게 인정

* 예: 손세정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비, 화상회의장 구축·운영비 등

** 예: 기관폐쇄에 따른 연구중단·재개 비용(사전조치 비용 포함) 등

*** 예: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 회의 취소 위약금 등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학회 취소 환불 코로나19
----	--------	----	-------	-----	----------------

Q45. 감염병 관련 환불 미지급액의 정산?

감염병과 관련하여 학회취소 등 환불 건이 증가하는데 환불 확정일이 없이 무기한 연장되는 경우 정산기간 연장 요청일을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A. 정산기간 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추가 반납을 하면 됩니다.

연구비 정산은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에 취소 건에 대해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으로 공문으로 추가반납 내역을 알리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반납해야 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감염병 관련 물품 코로나19
----	--------	----	-------	-----	-----------------

Q46. 체온계 구입 비목?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손세정제 등)은 연구활동비의 연구실 운영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체온계의 경우에도 연구실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혹은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목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A.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또는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주관기관이 정하고 있는 소액으로서 자산관리를 하지 않는 수준의 체온계는 연구실운영비 또는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국외여비수수료 코로나19
----	--------	----	-------	-----	---------------

Q47.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외여비수수료 집행?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외여비수수료 부분은 연구활동비 세세목을 국외여비->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구활동이 곤란한 경우(해외기관 방문, 국외교육 등) 국외여비 수수료는 사유서를 첨부 후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항공 바우처 코로나19
----	--------	----	-------	-----	--------------

Q48. 항공권 취소에 따른 항공사 바우처 사용?

국외출장 관련하여 항공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공사에서 바우처의 형식으로 기결제한 금액을 보전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를 1)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경우와 2) 변경된 학회의 일정이 차년도인 경우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차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소수수료의 지원 방안도 좋지만, 해외출장이 많은 과제의 경우에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취소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서 항공 취소에 따른 예산 사용이 많아 불필요한 예산 소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 가능합니다.

항공사에서 바우처로 제공된다면 해당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내부 결재)하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국외 출장 발생 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연구실 운영비 코로나19
----	--------	----	-------	-----	---------------

Q49. 손세정제, 마스크 등 집행?

연구실 운영비(손세정제, 마스크 등) 집행에 관한 주관기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정확히 어느 정도 선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 가능합니다.

제3자(일반 국민의 눈높이, 감사관 등)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과 범위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대량 구입이 필요하다면 필요성과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꺼번에 1년이나 2년/3년에 걸쳐 소요되는 것을 다량 구매하기보다는 1달이나 분기별 등 나눠서 실제 필요한 양만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과제종료 후 학회 등록비
----	--------	----	-------	-----	---------------

Q50. 과제 종료 후 학회 등록비?

연구과제 최종 종료일은 2020. 7.31.입니다. 해당 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 6.19.~6.20.에서 2020. 8.28~8.29.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 학회등록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불가합니다.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행연구과제의 최종 종료일 이후에 학회가 개최되므로 학회등록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기 등록한 등록비는 취소 후 반납하시면 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아크릴판 구입
----	--------	----	-------	-----	---------

Q51.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아크릴판 구입?

기초연구실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 급증으로 인하여 연구실의 연구원들 책상에 아크릴판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크릴판을 연구환경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목적이므로 연구환경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zoom 회의실 인터넷 사용료
----	--------	----	-------	-----	------------------

Q52. 온라인 회의를 위한 인터넷 사용료?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학술대회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되어 기존에 회의실 대여였던 항목이 ZOOM온라인 회의실로, 빔프로젝터 설치 관련비용이 ZOOM 온라인 회의실 인터넷 사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해당 연구 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합니다. 학술대회가 수행연구과제의 연구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여 개최하는 비용인 ZOOM온라인 회의실, ZOOM온라인 회의실 인터넷 사용료는 연구활동비(세미나 개최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노트북, 화상용 스피커폰 구입
----	--------	----	-------	-----	------------------

Q53. 노트북, 화상용 스피커폰 구입?

과제 수행 중 연구용 노트북 구입 하고자 합니다. 노트북 경우 연구장비? 연구활동비 사무기기? 어느 세목으로 집행 되어야 하는지요? 더불어, 코로나 상태로 외부 연구진들과의 만남이 어려워, 화상용스피커폰으로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해당 물품은 어느 세목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연구활동비입니다.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구입 가능합니다. 노트북과 스피커폰 구매 비목은 연구활동비(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워크숍 후 방역
----	--------	----	-------	-----	----------

Q54. 교내 워크숍 진행 후 방역?

연구 관련해서 교내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워크숍 진행 후 코로나19관련해서 해당 장소 방역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방역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는 있으나, 워크숍 후 추가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A.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대응 R&D 지침2판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개최 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비(손세정제, 일회용마스크 등)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사 개최 후 행사 장소에 대한 방역은 사업과 관련한 행사 개최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사 후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행과제 관련 워크숍 후 방역비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학회 등록비 취소
----	--------	----	-------	-----	-----------

Q55. 코로나로 인한 학회 등록비 취소?

국내 학회 참가를 위해 학회 등록비를 집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학회 측에서 등록비 취소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구비로 해당 등록비 금액이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필수 증빙서류와 연구비 비목 및 세세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02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를 때, 문의하신 내용은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예는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 회의 취소 위약금 등입니다. 문의하신 학회 등록비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할 경우 연구비(연구활동비-학회 참가비 등)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증명자료는 해당학회로 보낸 참석 취소 관련 문서(취소 사유서 포함. 공문, 메일 등), 해당 학회로부터 받은 등록 취소 관련 문서(공문, 메일 등), 등록비 납부 영수증, 등록비 취소 관련 환불에 대한 해당 학회의 안내문, 학회 등록 취소 사유 관련 문서(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 등) 등입니다.

분야	인문사회분야	비목	학술연구비	키워드	논문게재료
----	--------	----	-------	-----	-------

Q56. 연구과제 종료 후 논문게재료 집행?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한 형태로 전문기관을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게재료 집행은 연구과제 종료 후 2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이 제출 마감일(과제 종료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게재 또는 출간될 경우, 게재료 등의 비용을 그 날에 결제할 수 있고, 결제 후에 연구비로 지출하려면 카드 내역을 시스템에 받아오는 시간(1일), 연구비 집행 후 지불(약 5일) 등에 약 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 전의 질의응답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합리적인 논문게재료 지급을 위해 연구기간 종료 전에 논문 게재료 예상금액을 가집행(지출결의서 작성) 처리를 해서 집행한 것으로 행정 처리를 한 후에 논문게재 시 집행하면 되며, 혹여 가집행 처리를 한 논문 게재료를 2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액 반납) 출 마감일(과제 종료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결제 후 연구비 지출까지 모두 이루어져야하는 이런 불가피한 경우 카드 결제만 논문 제출 마감일에 이루어지면 연구비 집행을 인정해주실 수 없는지 문의합니다.

A. 가능합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6조(집행잔액의 회수) 제2항 제6호 "연구과제 수행 종료 후 논문게재료 등 학술활동 성과의 발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에 따라 논문게재료는 회수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정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1항 "주관연구 기관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한 형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연구종료 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종료 2년까지 집행을 인정합니다.

◇ 참고자료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6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연구과제별 사업비 사용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3. 다년과제의 경우 단계내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의 다음연도 연구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4. 사업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 연구과제 수행 종료 후 논문제재료 등 학술활동 성과의 발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이하 생략)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한 형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결과물 제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분야	인문사회분야	비목	학술연구비	키워드	임상시험 피험자 코로나 검사비용
----	--------	----	-------	-----	-------------------

Q57. 임상시험 피험자의 코로나 검사 비용 처리?

본 연구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피험자 분께서 1박2일 입원을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입원예정자 스크리닝' 제도에 따라, 1박 이상 입원 예정인 자는 반드시 COVID-19 검사 후 병동 입원 가능. 원칙적으로는 입원 전일 서울대병원 방문하여 원내 검사 후 다음날 다시 서울대병원 재방문하여 입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원에서 검사 비용을 부담) 피험자가 암환자인점, 연고지 인천인 점 고려할 때 오로지 COVID-19 검사만을 위해 입원 전날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귀가 후 다음날 다시 서울대병원을 방문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자도 이에 대해 심적 부담이 큼. 따라서 입원 전일 인천 개인병원에서 COVID-19 검사 후 입원 당일 검사 결과지 확인 후 이를 들고 서울대병원 연구병동 입원하는 것이 환자 보호 및 연구 진행에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사유로 병원내 COVID-19검사가 아닌 피험자 연고지인 인천개인병원에서 COVID-19 검사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A. 내부 계획을 확인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비는 해당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해야 하며,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임상시험의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연구목적 달성을 필요로 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을 필요하다면 집행이 가능한데, 문의내용에서 임상시험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아닌 인천개인병원에서 COVID-19검사를 한다면 동 임상시험과 관련한 내부계획에 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검사 관련 내용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내부계획에 없다면 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등)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야	인문사회분야	비목	학술연구비	키워드	향공권 치액
----	--------	----	-------	-----	--------

Q58. 항공권 재발행 차액금 처리?

항공권 취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천재지변, 유행성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곤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항공권 발행에서 다른 시간대 이동으로 차액금이 발생할 경우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와 차액금을 지출하면서 실수로 개인카드(재발행 전 연구비카드 사용)로 사용했을 경우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비는 해당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해야 하며,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항공권 발행이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여비는 주관연구기관 내규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출장 명령이 있을 때 가능한데 국외 출장 여비는 출장일수, 출장지역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지급하는데 항공권을 변경하여 차액금이 발생했다면 항공권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연구과제와 관련한 사유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적 사유라면 불가합니다. 여비 등은 주관연구기관 내규에 따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연구재료비****1. 정의**

연구자가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모성 경비로 시약(詩藥) · 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 ·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함.

2. 사용용도

- ① 시약(詩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②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3.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재료비	키워드	실험재료
----	--------	----	-------	-----	------

Q59. 실험재료 용도로 구매하는 기자재를 연구재료비로 처리?

모바일헬스케어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장비(보청기)를 실험 시 분해되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보청기 용도로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산단에서 자산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재료비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A. 가능합니다.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소모성(재료비의 특성)을 가진다면 연구재료비로 집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구장비의 경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지고 자산적 가치가 있어야하며,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해당됨에 따라 분해되어 독립적 사용이 불가한 경우 소모성 물품으로 변형됨에 따라 자산관리 및 장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재료비	키워드	재료비
----	--------	----	-------	-----	-----

Q60. 연구재료비 구매 공급 한도?

연구재료비에서 소모품 구매 시 단품 공급가액 한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제 시작 시 계획서에 들어가지 않은 품목입니다. 공급가액 : 450만원.

일반 재료비 지출처럼 집행하면 되는지요?

A.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연구재료비에서 공급가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관연구기관 자체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관연구기관 자체 승인(구매 사유서 포함)을 거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재료비	키워드	비목 선택
----	--------	----	-------	-----	-------

Q61.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비목 선택?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에서 과제의 세부 성격 상 다음과 같은 품목을 외부 교량 건설 현장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장 산업용 DB
2. 무선라우터
3. 현장카메라(CCTV용)
4. 계측데이터 수집장치

5. 전압공급장치

위 물품 중 200만원, 1,250만원짜리 물품도 존재합니다. 해당 물품은 교량에 설치되어 실험에 활용 됩니다. 이 경우 연구 실험실에 설치하지 않고 계속 외부에 설치되어 실험에 활용 되는데 시설 장비비로 구입해야 할지 연구 재료비로 구입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정의하는 '시설장비'는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합니다. 연구시설은 '일반 연구 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장비는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입니다. 장비와 재료를 구분하는 특징으로 장비는 내구성을 가지며, 재료는 소모성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현장 산업용 DB, 무선라우터, 현장카메라(CCTV용) 등이 위의 내용에 따를 때 어디에 속하는지 검토 하시어 비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자산등록대장에 등재되어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재료비	키워드	비목 선택
----	--------	----	-------	-----	-------

Q62. 연구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중 비목은?

실험에 필요한 혈청 분양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연구활동비'와 '연구재료비' 중 어떤 항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연구재료비는 수행연구과제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로서 사용되며 '소모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문의하신 혈청 분양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재료로서의 특징을 갖는지 등 검토를 통해 비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재료비	키워드	실험재료비
----	--------	----	-------	-----	-------

Q63. 실험재료로 오렌지 구입?

실험 재료로 오렌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오렌지를 화학 재료로서,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오렌지 안의 멜라닌 성분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구매가 가능하다면 연구노트 및 관련 논문으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오렌지를 재료비로 구매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오렌지 구입이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필요하다면 연구재료비(구매목적 및 사유서 첨부)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재료비	키워드	비목 선택
----	--------	----	-------	-----	-------

Q64.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기초연구실 후속연구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과제에서 한국기초조형학회에 작품을 출시하여 출시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연구활동비내의 교육훈련비 세세목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작품출시비의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학회 개최가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어떤 성격의 출시인지에 따라 비목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한국기초조형학회 작품 출시 내용이 해당연구에서 제작한 시작품이면 연구재료비이며,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갖는다면 연구활동비(논문제재비)입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재료비	키워드	연구재료비 허용 범위
----	--------	----	-------	-----	-------------

Q65. 연구재료비 허용 범위?

혹서 내 연구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에 활용되는 타이머, 온도계, 습도계는 연구재료비로 포함되나요? 연구활동비 내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혹은 사무용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A.

연구비는 해당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해야 하며,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를 때 문의하신 타이머, 온도계, 습도계 구매가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성 재료는 소모성의 특성을 갖는데 문의하신 타이머, 온도계, 습도계가 소모성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양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진과 주관연구기관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구실의 연구환경 유지에 필요하다면 연구활동비(연구환경유지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재료비	키워드	가스용기 구입
----	--------	----	-------	-----	---------

Q66. 재료비(가스용기) 구입?

재료비로 가스구입을 하였는데,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스용기를 구입을 해야하는데, 금액은 750,000원정도 됩니다. 구입 후 가스가 소진되면, 업체로 처분하거나 아님 다시 재충전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료비로 집행 가능 한가요?

A.

연구비는 해당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해야 하며,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를 때 문의하신 가스 구입이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연구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매 관련은 주관연구기관 내규를 따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6. 연구수당

1. 정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 목적 달성과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보상금·장려금)를 뜻하며, 과학기술분야는 “연구수당”으로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 교육부)는 “학술활동수당”으로 정의하고 계상 및 집행 기준을 달리함.

2. 사용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3. 계상기준

- ①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③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 ④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수당	키워드	직접비 집행 비율
----	--------	----	------	-----	-----------

Q67.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20% 미만일 경우 집행가능?

연구 시작 1개월 후 직접비 집행률 계산 시 인건비(미지급, 지급), 연구 수당, 기타 직접비(연구활동비, 재료비 등)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을 때,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하지 않으면 지급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A. 가능합니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시작 1개월 후부터 지급 가능하며 연구비 정산 시점에서 환수금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연구시작 1개월 후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비 정산 시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포인트 초과한 경우 '연구수당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메뉴얼〉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20/100)]
 - * 통합 EZbaro 적용사업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 통합 RCMS 적용사업 :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 전년도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집행 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 ※ 계산식의 결과 값이 음수(-)인 경우 부당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함.
- ⑥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⑦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 ⑧ 비영리법인 연구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수당	키워드	코로나19/ 연구수당 반납 유예
----	--------	----	------	-----	-------------------

Q68.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수당 반납 유예 가능?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접비 집행비율만큼 연구수당 반납을 유예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간접비의 경우는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회수를 보류하였으나, 연구수당은 현재로는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수당	키워드	연구수당
----	--------	----	------	-----	------

Q69. 이월된 연구수당 집행 가능?

인건비는 이월금액이 없고 연구수당만 이월하게 될 경우, 당해연도 인건비 실집행액의 20%가 넘지 않는다면 이월된 연구수당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수당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연구수당(전년도 이월금인 연구수당+당해연도 연구수당)**이 **실집행인건비(인건비 중 전년도 이월금+당해연도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수당	키워드	연구수당
----	--------	----	------	-----	------

Q70. 연구수당 집행률 계산?

이월된 연구수당은 인건비 실집행액의 20%가 넘지 않는다면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접비를 80%이상 사용시 협약용계획서 상의 연구수당이 100% 집행 가능한 것이라면 인건비 실집행액의 20%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월된 연구수당까지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협약용계획서 대비 추가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120%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직접비를 100% 집행하면 이월된 연구수당까지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직접비를 80%이상 사용하면 연구수당이 협약용계획서 대비 100%를 초과하여 집행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구수당을 집행할 때 유의할 점은 1.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2.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포인트 초과한 경우 해당 계산식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수당 집행율은 (이월된 연구수당 사용액+당해연도 연구수당액의 사용액/이월된 연구수당액+당해연도 협약금액의 연구수당액)×100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연구수당 집행비율은 100%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비를 100% 집행할 때는 이월된 연구수당을 집행할 수는 있으나,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수당	키워드	연구수당
----	--------	----	------	-----	------

Q71. 연구수당 계산?

현재 1차년도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인건비 19,800,000원, 외부인건비 57,170,000원, 연구수당 1,751,000원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참여인력은 PI와 참여연구원 2명이 있으며, 참여연구원 1명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구수당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51,000 * 0.7 = 1,225,700$ 원 금액 안에서 연구수당을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외부인건비)를 지급 중인데 월 지급 금액과는 상관없이 연구수당 70%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A.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전에 기여도 평가 등을 통해 지급합니다.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실집행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부당집행에 해당됩니다. 문의사항에서 확인할 사항은 1) 연구수당 1,751,000원이 실집행인건비의 20% 이내인지 2)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율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위탁연구개발비

1. 정의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2. 계상기준

- ①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당초계획 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위탁연구개발비	키워드	부가가치세
----	--------	----	---------	-----	-------

Q72. 위탁연구개발비 연구비카드로 집행 시 매출전표 총액으로 집행?

위탁연구과제(세금계산서 발행) 수행 시 카드영수증(매출전표)에 부가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매출전표에 표시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총액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위탁연구과제 연구비 수령 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전표를 발행한 기관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구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연구과제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에서 환급을 받기기에 연구비에서 집행한 경우 불인정 됩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 · 관리할 것

8

간접비

1. 정의

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투입되지만 개별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경비로 연구에 사용되는 건물, 연구지원 시설 및 기자재, 연구인력, 행정 지원 및 기타 지원인력 등 대학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뜻함

2. 사용용도

① 인력지원비

-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비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성과활용지원비

-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계상 기준

- ①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는 다년도 연구비를 기준으로 최초 협약 체결 당시 고시된 비율 이내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 체결시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 이내로 계상하되, 다년도 연구비 전체에 대해 비율을 적용한다.
- ②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③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⑥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 ⑦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시 공동관리규정 제25조 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간접비	키워드	집행율
----	--------	----	-----	-----	-----

Q73. 직접비가 50% 미만일 경우 간접비 차액의 이월이 가능한지요?

직접비 집행이 50%미만인 경우 간접비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장비 구입 등을 목적으로 직접비 대부분을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접비 이월이 가능한지요?

A. 불가합니다.

연구간접비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정된 재원으로 특이사항(감염병 등)이 아닌 일반적인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이월의 경우 차액의 **이월이 불가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간접비	키워드	코로나19/간접비 환수 보류
----	--------	----	-----	-----	-----------------

Q74. 코로나19 관련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관련 간접비 회수 보류 신청?

2019년 9월에 시작한 다년도 과제입니다. 2020년 2월에 1차년도 집행 완료가 되었고 5월 중에 정산완료를 하였으나, 2월에 해외학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소되고 결제한 항공권은 6월에 취소 처리가 되어 정산 반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산 중에 직접비 집행비율이 50%가 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간접비 회수보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사업 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2020년 지원 연구과제 중 다년도 연구과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이 저조한 경우에 한하여 간접비 회수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R&D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2. 코로나19 대응 R&D사업 간접비 회수 유예

적용대상

- (대상사업)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
- (적용과제) 2020년 지원 연구과제* 중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이 저조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유예 허용 가능

* 연구기간이 코로나19 심각단계 기간을 포함한 연구과제에 한하며, 다년도 연구과제 중 해당 연구기간이 마지막 연구기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연구기간 연장 시 코로나19 인정 범위(사유)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입국이 필수적이나(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출입국이 불가능하여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가 필수적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실험실 폐쇄, 실험자 모집불가 또는 연구진행에 필수적인 시약, 재료, 장비 등의 수급 및 연구 Data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그 외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계획 완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인정 범위(사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간접비	키워드	연구실 홈페이지 운영
----	--------	----	-----	-----	-------------

Q75. 연구실 홈페이지 운영 비용?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서 연구실 홈페이지 운영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단위 계약이고,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관리 등을 200,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총 기간은 2024년 2월말까지입니다. 홈페이지의 용도는 연구자가 진행하는 연구들에 대한 안내와 연구자료들을 공개하는 목적입니다. (연구재단과제 외 연구자가 수행하는 많은 과제들에 대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비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연구개발의 홍보 활동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행연구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간접비	키워드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
----	--------	----	-----	-----	--------------

Q76. 영리기관 간접비의 직접비 전용?

영리기관에서 수행연구과제의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는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하지 않은 간접비는 신설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공통 및 기타	키워드	여입 사업비
----	--------	----	---------	-----	--------

Q77.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여입된 사업비 처리?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카드 취소 등으로 여입된 금액은 기관흡수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정산 완료 후 여입된 카드 취소 환불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은 1) 이월해서 차년도 과제에 반영하여 사용하거나, 2) 정산완료 후 반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년도에 반영하려면 연구비 재정산을 요청하여 이월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반납처리는 재정산 요청 후 정산완료를 통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반납하면 됩니다.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공통 및 기타	키워드	발생이자 사용
----	--------	----	---------	-----	---------

Q78. 연구과제 정산 시 발생이자 사용?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꼭 당해연도 산입만 가능한지, 발생이자만 별도로 반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정해진 사용용도 외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 그 밖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연구 개발비의 사용). 위의 용도가 아니면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전자정산 완료 후(전문기관 접수완료) 이자에 대해 가상계좌로 반납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⑫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⑬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⑭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2항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⑮ 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연구개발에 재투자
2.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확산, 보호, 활용역량 강화
3. 그 밖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

1.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 해당 연도 연구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사용용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5) 국고 반납

※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이자가 ①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상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에 산입되어 연구개발비 예산에 포함됨

※ 2) ~ 5)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이자가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상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연구개발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음

2.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 해당 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이자(국고반납)

[부록]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202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록 4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1. 수립배경

- ④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의 일반적인 적용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중앙행정기관(이하 「부처」)에서는 현행 「공동관리규정」 및 소관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
- * : 코로나19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고지 등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등
- ④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지침의 내용 중 모든 부처에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공동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 ⇒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매뉴얼 마련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공백과 연구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 새롭게 다가올 기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확충

2. 적용범위 및 방법

- ④ 적용부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
- ④ 적용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 중 2020년도 진행 중인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 다만, 정부납부기술료는 2020년도 납부(또는 납부예정) 금액에 대해 적용
- ④ 적용기간 : 동 지원지침 적용을 고지한 날부터 적용과제의 해당연차 종료일까지
 - * 추후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 한편, 추후 다른 감염병의 전 세계 확산 등 경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 시에도 비상 매뉴얼로 활용
- ④ 적용방법 : 동 지원지침을 참고하여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을 체결(협약 미체결 과제)하거나 변경(협약 기체결 과제)
 - 우선 부처에서 연구개발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고,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2020년 상반기 내 변경을 권고)

3. 부처별 자체지침과의 관계

- ▶ 동 지원지침은 권고사항이며, 부처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고, 부처별 자체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지침을 우선 적용

4. 주요내용

가. 과제 공고 및 신청

- ▶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폐쇄,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의 격리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신청이 곤란할 경우 부처는 과제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
- ▶ 과제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방법을 적용

나. 과제 선정

- ▶ 과제 선정평가는 서면·화상 등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평가 실시
- ▶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평가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공동관리규정」 [별표1] 제3호에 따라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완화하여 적용

다. 과제 협약

- ▶ 부처 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내용·기간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약을 변경
- ▶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1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협약은 전자문서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당사자의 협의결과에 따라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 방법으로 체결

라. 연구개발비 지급·관리

- ▶ 과제 선정 통보 이후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선집행을 허용
- ▶ 참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의4]와 달리 적용

< 총 연구개발비 중 부처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50% 퍼센트 이내	좌동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60% 퍼센트 이내	65% 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75% 퍼센트 이내	80% 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75% 퍼센트 이내	80% 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이고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60% 퍼센트 이내	65% 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50% 퍼센트 이내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 부담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15% 퍼센트 이내	좌동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13% 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10% 퍼센트 이내	10% 퍼센트 이내
현금 부담 납부기간	협약종료 3개월 전	협약종료 전까지 허용

- ①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별표2] 중 인건비 계상기준 제4호라목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기준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지급 허용
 - ②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 등을 연구개발비 정산에서 폭넓게 인정
 - * 예: 손세정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비, 화상회의장 구축·운영비 등
 - ** 예: 기관폐쇄에 따른 연구중단·재개 비용(사전조치 비용 포함) 등
 - *** 예: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 회의 취소 위약금 등
 - ③ 단년도 협약을 체결하는 계속과제에 대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이 부진하더라도 부처에서 차년도 이월을 적극적으로 승인
- ※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는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부처의 승인없이 연구개발비 이월

마. 결과 보고 및 성과 평가

- 과제 중간·최종·추적평가는 서면·화상 등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평가 실시
-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평가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공동관리규정」 [별표1] 제3호에 따라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완화하여 적용
-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검토항목을 마련하여 중간·최종·추적평가 시 반영

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5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하고, 그 비율·방법 등에 관하여 부처별 특성에 맞게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5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부처별 특성에 맞게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코로나19 관련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알림공간>공지사항>코로나19 관련 NRF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rf.re.kr/cms/page/main?menu_no=439



연구윤리지원센터 연구정산팀(☏042-869-7788)
대전청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서울청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